

「수도권청 청사신축공사 관리감독 실태」 특정감사 결과

【2020. 6. 16.(화) / 감사담당관】

I 감사 개요

□ 배경

- 수도권청 청사신축 공사의 준공기한이 2019. 3. 13.임에도 현재까지 일부 미시공 및 하자가 있으며 준공이 지연되고 있음
- 수도권청은 시공사에 101,927천 원을 초과 지급하여 공사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일부 하도급업체는 공사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 목적

- 선금 및 기성금 등 공사대금 지급, 하도급 관리, 준공검사 등 공사 관리·감독 업무에 대하여 적정성을 감사
- 문제점의 원인과 책임 관계를 명확히 하여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

□ 감사 기간 및 대상

- 기간/인원: 2020. 4. 6.(월) ~ 4. 17.(금), 2주간 / 감사담당관 외 2명
※ 예비감사(4. 6. ~ 4. 10.), 실지감사(4. 13. ~ 4. 17.)
- 감사대상: 수도권기상청, 공사 관리·감독 공무원 등

□ 감사 중점

- 공사대금(선금, 기성금) 지급 및 관리 적정성
- 하도급 대금 지급 등 관리 적정성
- 공사 관리·감독 및 준공검사 적정성

II 감사 결과

□ 감사처분 총괄표

| 구 분 | 징계 | 경 고 | 주 의 | 시 정 | 통보 | 계 |
|--------------|-----------|-----------------|-----|-----|----|--------------|
| 처분요구 (건수) | 1 (2명) | 2 (1명, 기관 1) | - | - | 3 | 6 (2개 사항) |

□ 처분요구 목록

| 번호 | 관련 기관·부서 | 건 명 | 처분요구 | |
|----|-------------|-------------------------------|----------------|----------------------------|
| | | | 처분 종류 | 대상 |
| 1 | 수도권기상청 | 청사신축공사 관리·감독 업무 태만 | 징계 (경징계 이상) | 6급 A 5급 B |
| | | | 경고 | 5급 C (현 통과) |
| | | | 경고 (기관) | 수도권기상청 |
| | | | 통보 2 (부서) | 수도권기상청 ☐과 |
| 2 | 전 소속기관 | 회계 관계 직원의 계약 및 지출업무의 겸직 개선 | 통보 (부서) | 지방기상청 및 소속기관 회계관계직 운영부서 |

Ⅲ 문제점 및 처분요구

①

청사신축공사 관리.감독 업무 태만

수도권기상청

가) 문제점 요약

【 문제점 ① 선금 사용계획 및 사용내역 미확인 】

- 수도권기상청은 공사 계약상대자인 ◆건설에 2018. 3. 5. 계약금액의 30%인 840,400,000원을 선금으로 지급
- 계약담당공무원은 선금지급일 전에 기계설비공사와 조경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도,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계획을 확인하지 않았고, 제7회 기성금을 지급할 때까지 선금 전액을 정산 지급하면서도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이 포함된 선금사용내역서를 받지 않음
- 그 결과 하수급인은 선금을 배분받지 못하고 전액을 ◆건설이 사용함

【 문제점 ② 기성금 지급 부적정 】

- ◆건설은 8개 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하도급 대금을 수도권기상청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데 합의하는 ‘하도급 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를 제출
- * ◆ 건설은 8개 하도급업체와 하도급 공사 건별로 계약 후 합의를 제출 (2018. 2. 23. ~ 2019. 1. 9.)
- ◆건설은 제1회부터 제7회까지 기성금을 청구할 때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담당자는 청구내역에 따라 공사대금을 하수급인의 계좌로 입금
- 그런데 제8회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하도급업체를 수령인으로 정하여 공사대금을 입금해야 하는데도 수령인을 ◆건설로 지정하여 기성금 530,576,000원이 ◆건설에 입금됨(2019. 3. 13.)
- 담당자가 실수로 하도급업체에 입금해야 할 공사대금이 ◆건설에 입금되었다면,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업체에 입금해야 하는데도 ◆건설 대표로부터 채권가압류 상태라 반납하기 전에 다른 계좌로 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나누어 지급하라고 지시(2019. 3. 14.)

- 그런데 ◆건설은 공사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면서 채권채무 관계가 있는 하도급업체끼리 합의요청을 했다는 이유로 내부결제한 청구내용과 다르게 승인 받지 않은 하도급업체 등에게도 공사대금을 지급했고, 7,000,000원은 ◆건설이 임의로 사용
- 그 결과 위 ①번의 문제로 인한 결과를 포함하여 ◆건설에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보다 101,927,360원을 더 지급하고,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207,758,200원(수도권기상청에서 감사일 현재 산정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

【 문제점 ③ 준공검사 업무 부적정】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8조(준공) 제2항에 따라 예비준공검사를 할 수 있으며 준공검사를 하는 자는 예비준공검사시 지적된 사항의 시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2(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에 따라 국가가 신축하는 청사의 경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BF인증”이라 한다)을 받아야 함
- 감리용역 과업에는 예비준공검사를 하여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시공자에게 보완을 지시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2019. 3. 7.에 예비준공검사를 했음에도 감리는 예비검사 결과를 수도권기상청에 보고한 사실이 없고, 담당자 또한 예비준공검사 결과자료를 요구하여 확인하지 않음
- 수도권기상청은 2019. 3. 27.에 준공검사를 하였지만 미시공(건물 전체 커튼, 회의실 벽체 흡음제) 및 하자(금속공사, 타일공사, 위생기구 설치)가 발견되어 ◆건설에게 준공검사결과 부적합으로 통보
- 그런데 준공검사 부적합 항목에 없는 자동제어 중앙장치 미시공 부분을 준공검사 이후 확인했으며, BF인증과 관련하여 (주)○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인증준비 전반에 대한 사항을 준비하였으나 심사 결과 총 42건(점형블럭 및 손잡이 설치 등)의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등 준공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
- 또한, 준공정산서에는 계약금 3,754,531,000원에 대한 정산금은 3,649,701,000원으로 104,830,000원의 정산감액이 있는 것으로 되어있는데, 정산 증빙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아 정산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업체가 시공하지 않은 공사의 내역별 금액도 정확히 확인할 수 없음

- 그 결과 시공되지 않은 공사와 잘못 시공된 공사도 보완되지 않아 준공기한인 2019. 3. 13.에서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준공이 지연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수도권기상청은 ◆건설에 공사대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며, 하도급업체 2곳은 국가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음

나) 업무담당자들의 부당한 업무처리

【 6급 A(계약담당실무, 분임지출관, 감독공무원)】

- 위 사람은 선금을 지급할 때 하도급업체에 대한 선금배분 등 선금사용계획을 확인하지 않았으며, 선금지급일 2018. 3. 5. 전에 ◆건설과 하도급업체와 조경공사, 기계설비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는데도, 하도급 계약서 2건에 대해 계약서 등을 이메일로 받아 보관하고 부서장에게 보고하지 않았으며, 문서관리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았음
- 제8회 기성금을 하수급인 계좌에 입금하겠다고 내부결재로 부서장에게 보고했음에도 수령인을 계약상대자인 ◆건설로 지정하여 입금하는 바람에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이 입금되지 못하고 ◆건설에 530,576,000원 전액이 입금(2019. 3. 13.)
- 실수로 하도급업체에 입금해야 할 공사대금을 ◆건설에게 지급했다면 즉시 반납하도록 하여 정당한 방법으로 하수급인에게 입금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함에도 ◆건설 대표로부터 채권가압류 상태라 반납하기 전에 다른 계좌로 인출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설이 하도급업체에 나누어 지급하라고 지시(2019. 3. 14.)하여 청구내역과 다르게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이 지급되고, 7,000,000원은 ◆건설이 임의로 사용하는 문제 발생
- 또한, 수도권기상청에서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 내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건설이 117,400,000원을 별도로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이 확인되는 등 계약상대자와 하도급업체에 지급한 공사대금을 정확하게 관리하지 않음

- 준공검사와 관련해서도 **감독공무원으로** 준공검사 전에 감리에 의한 예비준공 검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며, BF인증에 대한 **미흡한 공사도 준공검사 결과 통보 이후에 확인하는 등 감독과 준공검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음**
- 준공정산과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아 정산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업체가 **시공하지 않은 공사의 내역별 금액도 확정할 수 없음**
- 또한, 위와 같은 문제점과 관련하여 감리는 비상주 수시감리라도 시공관리, 공정 관리, 기성검사, 준공검사 관련 사항의 확인 등 과업지시서에 정한 과업을 이행해야 함에도 적정하게 이행되지 않았고, 담당자는 이에 대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음(준공기한: 2019. 3. 7. 검사일자: 2019. 12. 30.)
 - * 시공사 책임으로 판단하여 지체상금은 부과하지 않고 750천 원 감액
- 그 결과 계약상대자인 **◆건설에 더 지급한 공사대금 101,927,360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도 일부(207,758,200원, 수도권기상청 확인 금액)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시공되지 않은 공사와 잘못 시공된 공사가 보완되지 않아 청사신축공사 준공기한인 2019. 3. 13.으로부터 1년이 넘게 지났는데도 감사일 현재까지 준공을 완료하지 못하고 있고, 공사대금 지급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결과를 초래

【5급 B(검사공무원, 분임재무관, 부서업무 총괄)】

- 위 사람은 청사신축공사의 검사공무원이고 분임재무관이며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으로서**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및 수령내역을 포함한 선금 사용내역을 확인해야 하는데도 **선금정산에 관한 사항이 분임지출관인 A의 업무로 판단했고**, A 또한 이를 부서장인 본인에게 보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확인하지 않음**
- 기성금을 지급하고자 할 때는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 계약에 따른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공사대금과 지급해야 할 공사대금을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등 공사대금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분임지출관인 A의 업무를 관리·감독해야 함**
- 그런데 A이 제8회 기성금을 지급할 때 수령인을 **◆건설로 지정하는 실수를 하여** 하수급인들에게 기성금이 입금되지 않고, **◆건설에 530,576,000원 전액이 입금된 문제와 관련하여 반납하도록 하는 등의 적정한 조치를 하지 않음**

- 감리용역의 과업지시서에 정한 예비준공검사를 2019. 3. 7.에 했음에도 그 결과를 보고받지 않는 등 확인하지 않았으며, 예산을 들여 용역사업으로 추진한 BF인증 준비도 준공검사 전에 확인하여 미흡한 사항에 대해 보완 후 준공검사를 해야 함에도, 준공검사 후 자동제어 중앙관제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부분 및 BF인증 관련 공사도 시공되지 않거나 잘못 공사한 부분이 발견되었고, 준공정산과 관련해서도 증빙서류를 제대로 받지 않아 정산금액을 확정할 수 없으며, 하도급업체의 미시공 내역별 금액도 확인할 수 없는 등 준공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음
- 그 결과 계약상대자인 ◆건설에 더 지급한 공사대금 101,927,360원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고,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도 일부(207,758,200원, 수도권기상청 확인 금액)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으며 준공이 지연되고 공사대금 지급 관련 소송이 제기되는 결과를 초래

【5급 C(검사공무원, 분임재무관, 부서업무 총괄)】

- 위 사람은 선금지급시 하도급 계약에 따른 선금사용계획을 받아 검토한 후 선금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하고, 선금을 지급한 후에는 선금배분 및 수령 내역을 확인해야 함
- A이 하도급 계약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성금 지급 청구(제1회 ~ 제3회) 내역에 △(주), (주)□의 하도급공사 기성금이 포함되어 있었고, 2018. 7. 2.에 오수처리 부분 공사 하도급 계약에 대한 문서를 결재했기 때문에 A에게 하도급계약 현황과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계획을 확인해야 함
- 그런데 선금신청시 하도급 공사에 대한 선금사용계획이 없었고, 하도급 계약서를 보고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하도급업체 선금배분에 대해 전혀 검토하지 않음
- 그 결과 ◆건설이 사용한 선금과 하수급인에게 배분해야 할 선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없게 되었고, 하수급인들에게 공사대금이 일부가 미지급되는 하나의 원인이 됨

다) 징계요구 등 처분요구

【처분요구】

- 청사신축공사 선금 및 기성금 등 공사대금 지급 관리와 준공검사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관련자들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2조에 따라 징계의결(경징계 이상)을 요구 (징계)
(관련자) 수도권기상청 ▣과 6급 A
 수도권기상청 ▣과 5급 B
- 수도권기상청 청사신축공사 관련 선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처리한 관련자에게 엄중 경고 조치 (경고)
(관련자) ○○○ ◇과 5급 C
- 수도권기상청 청사신축공사 준공과 관련하여 잘못 시공되거나 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보완하여 준공을 추진하고, 담당자의 업무 미숙과 경험 부족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적절한 조치 등의 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에 대하여 엄중 경고하며 앞으로 관련 업무 철저 요구 (경고)
(관련기관) 수도권기상청
- 수도권기상청 청사신축공사 관련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과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종결될 경우 그 판결 사항을 즉시 통보하고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방안 마련 (통보)
(관련부서) 수도권기상청 ▣과
- 감리는 시공관리, 공정관리, 기성검사, 준공검사 관련 사항의 확인 등 과업지시서에 정한 과업을 이행해야 함에도 적정하게 이행하지 않은 문제와 관련하여 시공사 책임으로 인하여 일부 감액 후 준공검사를 완료했다라도 감리용역 과업지시서에 “계약종료 이후라도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적극 협력한다”고 정한 사항에 따라 준공검사와 정산과 관련된 자료의 확인 등을 감리자에게 수행토록 하는 방안을 강구 (통보)
(관련부서) 수도권기상청 ▣과

【 문제점 】

- 「국고금 관리법」 제27조(지출기관과 출납기관의 분립)에 따르면 재무관, 지출관 및 출납공무원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음
- 수도권기상청은 청사신축공사와 관련하여 ▣과 담당자 1인이 계약업무 담당과 분임지출관, 공사감독공무원 등 3가지 업무를 겸하고 있었고, 계약업무와 지출업무를 같이함으로써 인하여 공사대금 지급 등 업무의 부담과 함께 효율적인 회계업무를 못하는 원인이 됨
- 이와 관련 소속기관의 계약 및 지출업무 실태를 조사한 결과 15개 소속기관 중 10개 기관이 지출관(지출관 보조 포함)과 재무관 보조 업무를 같은 직원이 수행
*지출관과 재무관 보조를 겸직하는 5개 기관 등
- 재무관과 지출관이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라는 법령의 취지가 훼손되고, 계약과 지출담당자가 상호 확인하는 등의 회계업무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음

【 처분요구/ 개선방안 】

- 「국고금 관리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출관(지출관 보조 포함) 업무와 재무관 보조 업무가 분리되도록 사무분장을 조정·운영하는 방안 마련 (통보) (관련부서) 지방기상청 및 소속기관 회계관계직 운영부서